

[별표 6] <신설 2011.3.16>

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(제88조의3 관련)

1. 성능기준

- 1)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“운행공기압”이 20%가 감소된 공기압 또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 이내에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
- 2)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“운행공기압”이 20%가 감소된 공기압에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 이내에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
- 3)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 이내에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. 다만,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.

- 주) 1. “운행공기압”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“추천냉간팽창공기압”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.
2. “추천냉간팽창공기압”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(타이어공기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)을 말한다.

2. 경고표시기준

- 1)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,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“가)” 및 “나)”에 적합할 것
 - 가)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멸되어야 하며,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
 - 나)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“가)”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
- 2)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는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정할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초기화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점멸될 수 있다.

3. 표기기준

- 1)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는 아래 “가)”부터 “다)”까지의 사항을 표기할 것. 다만, 제작자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기판넬 등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아래 “가)” 및 “나)”를 표기하여야 한다.
 - 가)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설치를 알리는 문구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재설정방법(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재설정기능이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)
 - 나)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 형상과 기능고장 식별부호 형상(기능고장 전용 식별부호가 설치된 자동차만 해당한다)
 - 다) 별표 2의 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”의 식별부호 점등에 대한 현상설명 및 올바른 조치방법